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3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삼한문화재연구원
피 고	달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가. 원고는 2014. 1. 28.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6-9 대 661.10㎡ 및 지상 건물 2,368.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18,33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6,733,400원, 지방교육세 7,673,340원, 농어촌특별세 3,836,670원, 합계 88,243,41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데, 문화재조사 및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야 하고, 원고와 동일한 법규에 의해 설립되고,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모두 취득세 감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0. 22.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조사·연구, 수장·전시 및 그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보급하고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정관 제3조)'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목적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다(정관 제4조).

1.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활동	5. 문화재 수장, 전시
2. 문화유산 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	6. 문화재 복원, 정비 ,수리사업 등
3.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7.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4. 문화유산 보존처리	8.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등에 따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고,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며,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1. 7. 2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육상지표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문화재청 제2011-32호)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조사기관의 종류를 육상발굴조사기관, 육상지표조사기관 등으로 구분하면서, 육상발굴조사기관은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 1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 보조원 2명, 보존과학연구원 1명, 육상지표조사기관은 조사단장 1명, 책임조사원 1명, 조사원 1명, 준조사원 1명의 인력기준과 항온·항습 수장시설, 보존처리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직위	조사1과	자료관리과	조사2과	조사3과	행정지원과
책임조사원	1		2		
보존과학연구원		1			
조사원	1		1	2	
준조사원	3	1	3	2	
보조원		2	1	2	
행정직					2
소계	5	4	7	6	2

※ 표 외에 원장 1명(조사단장), 조사연구실장 1명(책임조사원) 있음

4) 원고의 2012, 2013년 주요 수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주요 수입금 내역

일자	내용	거래처	수입금(원)
2012. 2. 29.	경산-청도간도로 4차로 확장공사	㈜ 강산건설	143,499,092
2012. 2. 29.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333-87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	256,727,273
2012. 4. 26.	망양-직산간도로 확포장공사부지	울진군청	279,026,363
2012. 7. 5.	경산-청도간도로 4차로 확장공사	㈜ 강산건설	250,000,000
2012. 7. 9.	동면지구 둑높이기 사업 문화재	한국농어촌공사	263,950,000
2012. 8. 16.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유적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	287,261,818
2012. 12. 3.	금봉2지구 둑높이기 사업 문화재	한국농어촌공사	388,907,273
2012. 12. 31.	경산-청도간도로 4차로 확장공사	㈜ 강산건설	250,000,000
2012. 12. 31.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한국도로공사	158,650,000

2013년 주요 수입금 내역

일자	내용	거래처	수입금(원)
2013. 4. 4.	계명문화대학 보건동 신축공사	계명문화대학	250,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2013. 4. 16.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한국도로공사	299,143,364
2013. 6. 12.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	149,727,273
2013. 6. 24.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한국도로공사	118,227,636
2013. 10. 1.	구천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61,451,818
2013. 12. 24.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한국도로공사	1,055,982,636
2013. 12. 31.	경산-청도간도로 4차로 확장공사	㈜ 강산건설	493,940,909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 일반음식적 403.76㎡를 2016. 12. 31.까지 임대하였으며, 그 외 지하 1층 260.20㎡, 지상 2 내지 5층 1,516.2㎡는 직접 사용하고, 지하 1층 주차장 188.63㎡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6) 칠곡군, 경산시, 경주시는 원고와 유사한 단체인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2조 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법인설립허가증, 조사기관 등록증'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을 뿐, 그 밖에 이들 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칠곡군, 경산시, 경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5. 12. 31.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1호)",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려면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원고의 주된 사업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어느 것이 주된 사업인지는 원고의 정관, 사업실적, 수입원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을 비교하여 그 비율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사업에는 '문화유산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정관 제4조 제2호)' 외에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같은 조 제3호)', '문화재 복원, 정비, 수리사업 등(같은 조 제6호)'도 열거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1. 7. 29.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육상지표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문화재청 제2011-32호)하여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를 수행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수입원 중 대부분은 지표·발굴조사로 인한 수익금인 점, ④ 원고는 갑 제5호증(학술연구활동자료)이 학술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 원고가 수행한 지표·발굴조사 이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할 조사보고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별도의 학술연구·발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조사보고서 발간 외에 학술활동으로 경비를 지출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⑥ 칠곡군, 경산시, 경주시가 원고와 유사한 단체인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설립근거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등을 검토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관련 자료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처분을 하면 족하고 다른 행정청이 원고와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 한 지방세감면처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기관으로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 등을 문화재청 등에 제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판사 이아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문화재 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자료제공 등) ① 제12조에 의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표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자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평·단면도(축척 1/5000~1/10000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도면)
2. 사업계획서
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지표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지표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협의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와 사업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PDF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9

장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3.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련공문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2. 표본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표본조사·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10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